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

이 명 신⁺

(경상대학교)

양 난 미⁺⁺

(경상대학교)

[요 약]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인지 및 태도(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와 실제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경남지역 세 도시의 남성경찰 35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델이 발견되었다(CFI=0.947, IFI=0.948, RMSEA=0.048).

분석결과, 적극적 수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폭력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이차폭력 행동이 감소되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이차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 수사지침의 재정비, 의식전환 프로그램, 경찰의 전문화, 수사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사와의

* 본 연구는 2009년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한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망(Safe Zone)만들기: 아동성학대·성폭력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대응 지침』을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의 일부와 그 외의 두 도시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 주저자

++ 교신저자

연계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법지식, 경찰의 임무,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 이차폭력

1. 서론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성적자율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할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신고와 고소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리어 성폭력피해자는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 속에 이차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1993년 제 48차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 이후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폭력피해여성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이 제시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르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신성대, 2009: 10-11).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성폭력피해자관리현장”이 선포된 후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 8차 개정¹⁾을 통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확립되었으며, 2006년 제 11차 개정을 통해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이차피해자화 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류병관, 2006: 416).

법의 개정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에서도 수사방침 및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16호)을 제정하여, 수사시 이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경찰은 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 특채, 피해자서포터제도와 피해자지원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보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였다(신성대, 2009: 20-23).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법의 개정과 경찰의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

1) 성폭력법 제 8차 개정(2003)의 내용: ① 13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촬영, 보존(제 21조의 2 신설), ② 13세미만, 장애인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 22조의 3 제 3항 신설), ③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제 22조의 4 신설), ④ 13세 미만, 장애인, 공판기일 출석 진술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 청구 가능(제 22조의 6 제 1항 후단 신설).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여전히 실제 발생율의 2.2-6.1%에 불과하며(장화정, 2006: 71),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도리어 감소되는 추세이다.³⁾ 또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분류되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기소된 성폭력 범죄 중 약 4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1.4%만이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김승권 외, 2008: 189).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신성대, 2009: 32에 재인용). 이러한 현실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미온적·소극적 수사와 이차피해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반응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형사사법체계 내에 피해자와 여성에 반하는 편견(antivictim, antiwoman biases)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ousa, 1999; Spohn & Holleran, 2001; Barnett, Miller-Perrin & Perrin, 2005: 246에 재인용). Berger와 동료들(1988)은 법개정이 형사사법체계의 공식적 업무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형사사법 관련자들이 법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 전통적인 강간통념에 입각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Lord & Rassel, 2002: 158에 재인용). Hodgson(2002: 173)은 설사 경찰조직 내에서 정책 및 절차가 바뀌었다라도, 사회에 팽배한 이념, 규범, 신념의 대부분은 경찰 하위문화 내에서 생산, 재생산을 거듭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활동은 대부분 별 변화없이 종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법이 개정되어도 이를 운용, 실행하는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내재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검토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며(Bove & Stermac, 2002: 120),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차피해, 이차폭력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이루어진 법개정 및 경찰제도의 개편이 과연 실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사건 수사를 위해 맨처음 성폭력피해자와 접촉하고, 피해자가 고소와 증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이 취하는 최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Lord & Rassel, 2002: 157).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 수사시 경찰이 실제로 어떻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과정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Bourque, 1989; Frazier & Haney, 1996; Lord & Rassel, 2002: 157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폭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피해 당사자와 성폭력관련 사회복지사로부터의 자료에 입각해 이루어진 반면, 직접적으로 이차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그 수사행동을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

2) 1980년 인구 10만명 당 10.4명이었던 강간범죄 건수가 2006년에는 27.7명으로 증가되었다(주재선·황보은, 2006: 431; 김승권 외, 2008: 177).

3)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1994년 75.9%였으나(대검찰청, 1995;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00: 66에 재인용), 그 후 매년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41.6%로 감소하였다(여성부, 2008b: 28).

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과 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성폭력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수사행동을 경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폭력관련 법과 경찰지침에 제시된 경찰로서의 임무를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적극적 수사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수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행동 결정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영향력이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경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이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실태와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에 대한 이해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차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통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 1) 성폭력사건 수사시 경찰은 법과 경찰지침에 제시된 경찰의 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 2)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실제 수사행동(적극적 수사 vs. 이차폭력)은 어떠한가?
- 3) 경찰의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4) 경찰의 수사행동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실태 및 문제점

(1) 경찰의 소극적 대처, 보호·연계노력의 부족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경찰은 범죄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

한 경찰의 대응이 매우 늦고, 극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호대, 2004: 255).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이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 반응을 질문했을 때,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응답은 38.0%였고, 반면 '바쁘다며 관심두지 않을 것'이 52.0%, '도리어 짜증내며 신고자를 원망할 것'이 6.9%로 나타나, 약 60%의 응답자는 경찰이 신고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진, 2006: 90). 미국에서도 약 50%의 형사사법 담당자들이 성폭력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있어 이러한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신고된 강간의 단 22-25%만이 기소되었고 10%내외만이 유죄판결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Campbell, 2006: 31).

한편,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경찰은 의료기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사법체계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살펴볼 때, 이러한 연계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실제 사건 수는 약 30%로 나타나 연계노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진, 2006: 91). 특히, 경찰의 경우 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수사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경찰업무 중 성폭력이 지니는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유진, 2006: 91).

(2) 이차폭력의 가능성

Campbell과 동료들(2001)과 Campbell과 Raja(2005)는 성폭력피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회생화를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형사사법 담당자들과 접촉한 후 죄의식, 우울, 불안감, 불신을 갖게 되며, 더 이상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Campbell, 2006: 31에 재인용). 이는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 지연 및 사건처리를 회피함으로써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거나(곽대경·곽영길, 2006: 280-283), 피해자가 도리어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조국, 2002: 193). 실제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반복되는 진술강요,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을 요구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품행이나 이전의 성관계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성폭력피해자가 도리어 성폭력을 유발시켰다고 비난하는 등의 경찰의 행동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류병관, 2006: 402-403; 조국, 2002: 195; 황현락, 2007: 388; 김용근, 2008: 107). 이처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인 취급하거나, 가해자 옹호적 태도 및 합의중용 등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이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이재희, 2008: 38-47; 조국, 2002: 193).

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피해"는 성폭력피해로 발생하는 일차피해(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김용근, 2008: 107에 재인용).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의 수사·공판 단계별 이차피해 사례분석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이차피해"의 52.2%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며, 수사·공판과정 이외의 경우 21.1%, 공판과정에서 11.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32).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피해"의 절반이상

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의 이차피해자화를 방지하고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 및 이차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지식, 태도, 수사행동

성폭력의 법적 개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강간이 성폭력으로 간주되려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지만 1984년 이후에는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로 수정되었다(Barnett, Miller-Perrin & Perrin, 2005: 226-227). 이처럼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재정의 되었지만, 성폭력의 개념은 협의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전형적 성폭력으로 국한될 수도 있고, 넓게는 성희롱처럼 폭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황현락, 2007: 377).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형법」에서는 강간, 간음, 성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등 전형적인 성범죄 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양한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없이 고소 또는 수사할 수 있는 대상도 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⁴⁾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는 수사관이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빈번히 이루어지는 성폭력관련 법의 개정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관련 법의 개정 이후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해 보다 민감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경찰 자신은 법개정으로 인해 수사가 촉진되고 피해자에 대한 신빙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Lord & Rassel, 2002: 157). 이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지식은 경찰의 태도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경찰의 수사임무에 대한 인식, 편견, 수사행동

성폭력사건 수사시 경찰이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대여성·아동범죄실무매뉴얼』은 성폭력사건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 8조의 2)을 우선 적용하여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고죄에 해당하였다(경찰청, 2002: 59). 그러나 2008년 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6조)에 의해 청소년의 성폭력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에 대한 수사요령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경찰청, 2002: 77-97). 수사지침을 통해 제시된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김용세·김재민, 2006: 448). 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확보, 심리적·신체적 상처 최소화,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에 연계 조치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경찰청, 2002: 81-83). 특히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제 2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경찰청, 2002: 94-97). 이처럼 피해자중심으로 경찰수사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의 임무도 확장되어, 출동·수사라는 기존의 임무에 피해자 보호·연계, 이차피해방지 임무가 추가되었다.

법제도 및 수사지침을 통해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적극적 수사 및 피해자보호라는 경찰에게 기대되는 임무의 수행 여부는 경찰자신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피해자중심 수사의 중요성 인식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매뉴얼과 지침에 피해자보호를 위해 준수할 기본원칙이 망라되어 있어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피해자보호에 부족함이 없지만, 수사경찰관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일상적인 직무집행의 일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김용세·김재민, 2006: 436). 미국에서는 아동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사법 과정에서 녹화진술 및 화상증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약 17%)이었는데, 대다수의 형사사법 관련자들이 개인적 편견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amill, Graham, Thomason & Huerta-Choy, 2001: 287-290).

아울러 수사임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실제 수사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폭력 및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사건이 신고 되어도 경찰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거나 수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종종 지적되기도 한다(Hodgson, 2002: 174). 피해 여성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신고가 무고일 수 있다는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수사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odgson, 2002: 188). 따라서 경찰의 수사임무에 대한 인식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성폭력에 대한 편견

법지식과 수사임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및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 역시 경찰의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성폭력에 대한 편견: 상해와 저항, 합의하의 성관계

성폭력피해자의 이차피해 문제는 빈번히 대두되는데, 이는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황정익, 2007: 421).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의 대상이 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받게 된다. 범죄현장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범행당시의 상황에 대한 세세한 질문, 범죄현장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범행당시의 상황에 대한 신문, 대질, 범인 식별, 증거확인 등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이차적 피해 불러올 수 있다(황현락, 2007: 397).

Renner(2002: 139)는 여성의 성폭력피해 여부와 성폭력의 상대적 심각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체적 상해 여부, 가해자의 형사적 위험성 여부라는 세 요인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일 때, 어느 정도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간주한다(Renner, 2002: 139). Spohn과 Holleran(2001)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기소될 가능성 적어지고, 기소여부 결정시 검사는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특성(성관계 이력, 품행 등)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피해자의 특성은 성폭력범죄 관련 증거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Barnett, Miller-Perrin & Perrin, 2005: 246에 재인용).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다른 면에서는 형사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정은 가해자에게 관대해지며,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은 고소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nner, 2002: 140).

수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발생시 동의여부와 강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에 그 논점이 집중된다(Lord & Rassel, 2002: 165).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신체적 상해여부는 동의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옷이 찢기지 않거나, 신체적 상해가 없다면,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가 되려면 여성은 신체적 상해를 입어야 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Renner, 2002: 144). 강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제력 사용여부에 대한 규정은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를 중시하며, 특히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합의하의 성관계(consensual sex)”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Renner, 2002: 144),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Ullman, 1996; Robin, 1977; Lord & Rassel, 2002: 165에 재인용).

이처럼 성폭력 수사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성 여부를 사정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데(Hodgson, 2002: 173),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성폭력피해 여성은 피해경험 자체를 부인당하거나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두 번 희생자가 된다(Renner, 2002: 148).

②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수사행동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형사사법 담당자들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강간신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Burt는 여성의 옷차림과 행동은 강간을 유발하며,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행해지고,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회적 통념을 강간통념(rape myth)라고 정의하였다(신현기·이상열, 2006: 256-257). 이러한 강간통념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상해와 저항, 합의하의 성관계)을 형성한다.⁵⁾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성폭력을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폭력 수사과정을 왜곡시키고(Bove & Stermac, 2002: 121), 그 결과 형사사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폭력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신성대, 2009: 34).

5)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강간통념으로부터 성폭력에 대한 편견(저항과 상해, 합의하의 성관계)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관행과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유진, 2006: 60). 성폭력예방과 대처에 관여하는 6집단(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의 강간통념(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결과, 경찰집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강간통념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1989; 최유진, 2006: 61에 재인용).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정, 2005: 41-49; 최유진, 2006: 61-62에 재인용). 뿐만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수사시 파악하려는 정보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정·조은경(2004: 135)에 의하면, 강간통념이 높은 집단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폭력강도, 피의자의 사정여부, 저항정도, 사건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성폭력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은 이차피해유발 질문을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오류율)가 72.14%로 높게 나타났다(장미정·조은경, 2004: 133-13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경찰관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수사내용과 수사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폭력사건 수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적극적 수사와 이차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지식과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가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연구 방법

1) 응답률 및 연구대상자

경남지역 3개 중소도시의 경찰을 대상으로 2009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찰서, 파출소 및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전원에게 약 94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423부가 회수되어 45.0%의 응답율을 보였다. 회수된 총 423부의 설문지 중에서 (남성경찰관의 수사행동을 조사하고자) 여성경찰관이 응답한 24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부를 제외한 총 35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남성경찰관의 연령은 만 23세에서 58세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42.90세였다. 참여자의 학력은 대졸이 21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129명(37.2%), 대학원 이상이 4명(1.2%)이었다. 평균 근무기간은 17년 3.18개월이었고, 근무기관으로 지구대가 198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서가 117명(34.3%), 파출소가 26명(7.6%)이었다.

2) 측정도구

(1)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법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3세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입은 경우 수사해야 한다'와 같은 지시문을 주고,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1점, 모르는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56이었다.

(2) **보호연계 임무 인지**: 성폭력 사건 수사시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 및 의뢰한다' 등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경찰의 임무로 인지하는 여부를 측정하였다. 경찰의 임무로 인지하는 경우 1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사건 수사에서 보호연계를 경찰의 임무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76이었다.

(3) **성폭력에 대한 편견**: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명신·이계민(2009)이 개발한 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3문항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홈페이지(<http://www.sisters.or.kr>)에 있는 성폭력 통념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와 같은 지시문을 주고, 이에 대한 찬반정도를 질문하였다. '매우 반대'(1)~'매우 찬성'(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87이었다.

(4) **적극적 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대여성·아동범죄실무매뉴얼』(경찰청, 2002: 77-97)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6문항(신고 시 즉각 출동, 피해자보호, 의료적 처치 우선, 녹화진술, 관련기관 의뢰 등)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수사시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 '법의학 증거채취를 위해 신고 즉시 성폭력전담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등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84였다.

(5) **이차 폭력**: 성폭력 사건 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이차폭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차폭력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⁶⁾ 연구자가 개발한 4문항(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죄입증 치중,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유죄입증 요구, 반복 진술, 피해자진술 의심)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수사시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범죄입증에 중점을 둔다' 등과 일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사건 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이차폭력의 정도가

6) 이차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Lord & Rassel(2002: 165), Hodgson(2002: 173), 이재희(2008: 38-47), 김용근(2008: 107)의 내용을 참조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71이었다.

3) 자료분석

먼저,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검토하였고 성폭력사건 수사시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행동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한 다른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남성경찰관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설적 이론모델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방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하는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론적 모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이 모델에 제시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델 검증에서는 측정문항이 3개인 법지식, 4개인 이차폭력은 실제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고, 문항이 6-8개인 나머지 변인들은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박준호·서영석, 2009: 32-33 재인용) 각 척도별로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 문항꾸러미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모형검증에서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IFI, TLI, CFI, RMSEA 등을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 이하(Browne & Cudeck, 1993)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IFI,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혹은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Garson, 2008; 박준호·서영석, 2009 재인용; 홍세희, 2001: 49-52).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 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성폭력 수사시 경찰의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을 조사한 결과(〈표 1〉),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모두 89%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인이 원치 않아도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74.6%로 다소 낮았다.

〈표 1〉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내 용	사실 여부		계
	예	아니오	
13세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해야 한다	317(89.3)	38(10.7)	355(100)
본인이 원치않아도 13세이상 청소년의 성폭력을 수사해야 한다	265(74.6)	90(25.4)	355(100)
장애인을 간음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즉각 수사해야 한다	317(89.3)	38(10.7)	355(10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경찰은 성폭력사건 수사에서 보호연계를 경찰의 임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즉, 의료기관 의뢰, 보호시설 의뢰, 성폭력 상담원과 업무협조, 정보망 구축 등의 활동을 모두 경찰의 임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표 2〉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

내 용	예(%)	아니오(%)	계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 및 의뢰	324(91.3)	31(8.7)	355(100)
피해자보호를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에 의뢰	313(88.2)	42(11.8)	355(100)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과 업무 협조	320(90.1)	35(9.9)	355(100)
성폭력관련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 정보망 구축	310(87.3)	45(12.7)	355(100)

성폭력과 관련된 편견을 제시한 후 찬반의견을 물었을 때(〈표 3〉), 대다수의 문항에 반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데이트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 있다' 등의 문항에는 2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거부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등 법적 편견의 소지가 있는 문항에 있어서는 편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성폭력에 대한 편견

내 용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M(SD)
성폭력은 사적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	158 (44.5)	163 (45.9)	30 (8.5)	4 (1.1)	1.66 (.68)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111 (31.3)	163 (45.9)	75 (21.1)	6 (1.7)	1.93 (.77)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 한다	100 (28.2)	198 (55.8)	51 (14.4)	6 (1.7)	1.90 (.70)
잘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129 (36.3)	182 (51.3)	41 (11.5)	3 (0.8)	1.77 (.68)
눈에 띄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137 (38.6)	193 (54.4)	24 (6.8)	1 (0.3)	1.69 (.61)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127 (35.8)	184 (51.8)	40 (11.3)	4 (1.1)	1.78 (.68)
데이트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 기 어렵다	89 (25.1)	190 (53.5)	68 (19.2)	8 (2.3)	1.99 (.73)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 있다	82 (23.1)	197 (55.5)	71 (20.0)	5 (1.4)	2.00 (.70)

2)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 이차폭력) 정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행동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적극적인 수사행동과 일치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이차 폭력이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40%~50%이상의 경찰이 '전혀 불일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4〉 성폭력 사건수사에서 경찰행동

내 용	전혀 불일치	다소 일치	상당히 일치	매우 일치	M (SD)	
적극적 수사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출동하여 수사에 착수한다.	8 (2.3)	47 (13.2)	130 (36.6)	170 (47.9)	3.30 (.79)
	수사시 피해자 신변에 대한 비밀 보장, 사생활 보 호를 위해 노력한다.	13 (3.7)	44 (12.4)	98 (27.6)	200 (56.3)	3.37 (.84)
	수사에 앞서, 피해자의 의료적 처치를 먼저 하도록 한다.	23 (6.5)	95 (26.8)	108 (30.4)	129 (36.3)	2.97 (.94)
	법의학적 증거채취를 위해 신고 즉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22 (6.2)	103 (29.0)	120 (33.8)	110 (31.0)	2.90 (.9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성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에 의뢰한다.	22 (6.2)	104 (29.3)	125 (35.2)	104 (29.3)	2.88 (.91)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진술을 줄이기 위해 녹 화진술을 한다.	15 (4.2)	87 (24.5)	118 (33.2)	135 (38.0)	3.05 (.90)
	수사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범죄입증에 중점 을 둔다.	145 (40.8)	104 (29.3)	70 (19.7)	36 (10.1)	1.99 (1.01)
이차 폭력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대 해 반복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한다.	153 (43.1)	144 (40.6)	41 (11.5)	17 (4.8)	1.78 (.88)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도 록 요구한다.	145 (40.8)	133 (37.5)	62 (17.5)	15 (4.2)	1.85 (.86)
	가해자 범행수사보다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지 조사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183 (51.5)	108 (30.4)	46 (13.0)	18 (5.1)	1.72 (.88)

3)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연령은 교육정도와 부적상관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교육정도는 법지식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편견, 법지식과 이차폭력, 보호연계임무 인지와 편견, 편견과 적극적 수사,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 인지,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임무 인지와 적극적 수사, 편견과 이차폭력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교육정도	수사임무 법지식	보호연계 임무 인지	성폭력 편견	적극적 수사	이차 폭력
연령	1.00						
교육정도	-.38 ***	1.00					
수사임무 법지식	.06	.12 **	1.00				
보호연계임무인지	-.00	.06	.16 **	1.00			
성폭력 편견	.11 *	-.04	-.17 **	-.14 **	1.00		
적극적 수사	.08	.09	.24 ***	.21 ***	-.25 ***	1.00	
이차 폭력	-.06	-.06	-.22 ***	-.10	.16 **	-.13 *	1.00
평균	42.90	1.64	.84	.89	1.86	3.08	1.83
표준편차	7.05	.50	.26	.24	.51	.65	.66

주. *p<.05, **p<.01, ***p<.001

4) 경찰의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의 적극적 수사행동에 연령, 교육정도,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 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이차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최대가 .997, VIF는 1.027로서 독립변수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성태제, 2007). 경찰의 적극적 수사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은 연령과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이차폭력을 포함하는 모델2로 약 1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beta=.13$, $t=2.29$, $p<.05$),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beta=-.21$, $t=-3.95$, $p<.001$), 보호연계임무인지($\beta=.15$, $t=3.00$, $p<.01$)와 법지식($\beta=.15$, $t=2.76$, $p<.01$)이 적극적 수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보호연계 임무 인지가 높을수록, 경찰의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경찰의 적극적 수사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경찰의 적극적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모델1		모델2	
	β	t	β	t
연령	.13	2.18*	.13	2.29*
학력	.14	2.35*	.10	1.79
수사임무 범지식			.15	2.76**
보호연계임무인지			.15	3.00**
성폭력 편견			-.21	-3.95***
이차 폭력			-.04	-.69
F	3.73*		9.28***	
R ²	.02		.14	
R ² change			.13***	

주. *p<.05, ***p<.001

경찰의 이차폭력 행동에 연령, 교육정도, 범지식, 보호연계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최대가 .937, VIF는 1.225로서 독립변수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성태제, 2007).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경찰의 이차폭력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범지식, 보호연계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가 경찰의 이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약 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폭력에 수사임무에 대한 범지식($\beta=-.19$, $t=-3.44$, $p<.01$)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beta=.12$, $t=2.09$,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임무에 대한 범지식이 적을수록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경찰의 이차폭력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7〉 경찰의 이차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모델1		모델2	
	β	t	β	t
연령	-.09	-1.54	-.08	-1.30
학력	-.09	-1.56	-.05	-.93
수사임무 범지식			-.19	-3.44**
보호연계임무인지			-.02	-.32
성폭력 편견			.12	2.09*
적극적 수사			-.04	-.69
F	1.743		4.60***	
R ²	.01		.08	
R ² change			.06***	

주. ***p<.001

5) 측정모형 검증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은 198.21($p < .001$)이었지만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값은 .048,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IFI, TLI, CFI값은 .950, .934, .947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별 부하량을 살펴보면,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은 .52-.69,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 인지는 .50-.86,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68-.93, 적극적 수사는 .61-.86, 그리고 이차폭력은 .56-.73로 모두 .50이상의 부하량을 보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8〉 측정변인의 요인계수(N=354)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C.R	β
수사임무 법지식	law1	1.00			.52 ^{***}
	law2	1.35	.24	5.72	.50 ^{***}
	law3	1.32	.23	5.83	.69 ^{***}
보호연계임무 인지	att1	1.00			.70 ^{***}
	att2	1.42	.12	11.45	.86 ^{***}
	att3	.93	.09	9.94	.61 ^{***}
	att4	.85	.10	8.28	.50 ^{***}
성폭력에 대한 편견	pre1	1.00			.68 ^{***}
	pre2	1.40	.11	12.31	.93 ^{***}
	pre3	1.26	.10	12.18	.73 [*]
적극적 수사	act1	1.00			.61 ^{***}
	act2	1.65	.15	11.38	.84 ^{***}
	act3	1.54	.14	11.34	.86 ^{***}
이차 폭력	sec1	1.00			.56 ^{***}
	sec2	1.09	.13	8.17	.73 ^{***}
	sec3	.99	.13	7.89	.65 ^{***}
	sec4	.88	.12	7.33	.56 ^{***}

주. *** $p < .001$

6) 이론모형 검증

이론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198.21($p < .001$)이었지만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값은 .048로 보통의 적합도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IFI, TLI, CFI값은 .948, .934, .947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이론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beta = -.17$, $p < .05$), 이차폭력($\beta = -.36$,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법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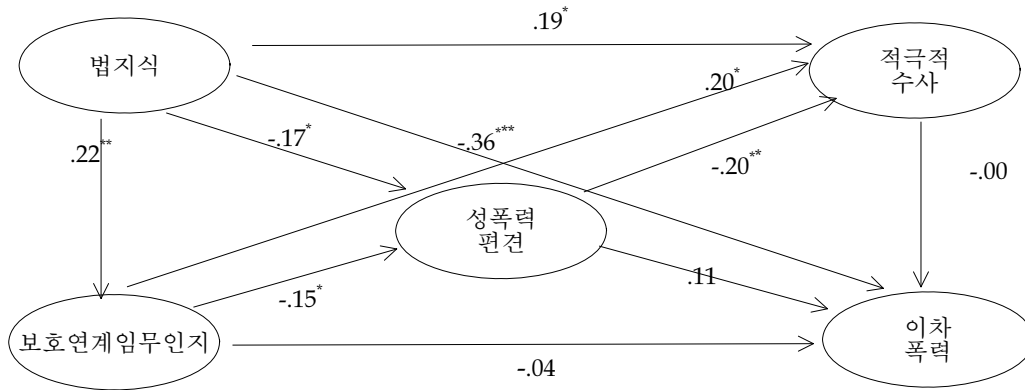
은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beta=.22, p<.01$), 적극적 수사($\beta=.1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beta=-.15,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적극적 수사($\beta=.20, p<.01$)와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보호연계 임무 인지와 이차폭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4, p>.05$). 또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beta=-.2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차폭력($\beta=.11, p>.05$)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0, p>.05$).

〈표 9〉 이론변인의 경로계수(N=354)

예언변인	종속변인	B	SE	C.R	β
수사임무 법지식	성폭력에 대한 편견	-.40	.18	-2.20	-.17*
	보호연계 임무 인지	.26	.10	2.71	.22**
	적극적 수사	.50	.21	2.43	.19*
	이차 폭력	-1.24	.34	-3.63	-.36***
보호연계임무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29	.13	-2.28	-.15*
	적극적 수사	.42	.14	2.99	.20**
	이차 폭력	-.10	.20	-.50	-.04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	-.22	.07	-3.11	-.20**
	이차 폭력	.16	.10	1.56	.11
적극적 수사	이차 폭력	-.00	.10	-.02	-.00

주. * $p<.05$, ** $p<.01$, *** $p<.001$



〈그림 1〉 이론모델의 그림(N=354)

모형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법지식과 보호연계 임무 인지 사이의 직접효과는 .19, 간접효과는 .03로 총효과는 .22였다.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사이의 직접효과는 .19, 간접효과는 .08로 총효과는 .27이었다. 이는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 인지 사이에서 그

리고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직접효과와 간접효과(N=354)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법지식 → 성폭력에 대한 편견 → 보호연계임무 인지	.19	.03	.22
법지식 → 성폭력에 대한 편견 → 적극적 수사			
법지식 → 보호연계임무 인지 → 적극적 수사	.19	.08	.2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그 수사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차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경찰의 수사실태 및 수사행동 결정요인

(1) 경찰의 인지 및 태도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 임무 인지, 편견)

성폭력관련 법에 제시된 경찰의 임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폭력사건 발생시 수사 임무에 대한 법지식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90%에 달했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성폭력사건을 수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5%만이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신고될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 1/4의 경찰관이 이 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사건 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연계를 경찰의 임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10%의 경찰이 이를 경찰의 임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찰들이 성폭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동의하의 성관계로 간주하는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20%이상이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항 및 동의', '합의하의 성관계'와 관련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의 성폭력사건 수사행동(적극적 수사 vs. 이차폭력)

경찰 스스로 자신의 수사행동을 평가했을 때, 거의 대부분(93%)의 경찰이 적극적 수사(신고 즉시 출동, 피해자 사생활보호, 녹화진술, 의료시설 및 상담·보호시설로 연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 40%의 경찰은 이차폭력 행동(반복진술요구, 가해자 유죄입증 요구, 피해자 진술 의심 및 조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적극적 수사를 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동시에 이차폭력 행동의 비율도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치면서도, 어떤 행동이 이차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 경찰의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수사행동 결정요인)

경찰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인지 및 태도(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와 실제의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 수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 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폭력 행동에는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한 가지 해석은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결국 성폭력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 역시 이차적 폭력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사실규명이라는 수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들이 이차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한 수사행동의 일부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의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수사와 이차 폭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오염되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 편견의 역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경찰이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고,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 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편견

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편견을 경유하여 적극적 수사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편견이 감소되며, 편견이 낮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된다. ②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는 적극적 수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편견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편견이 감소되며, 편견이 감소되면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된다.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이차폭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강간 통념이 이차폭력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예측한 선행연구(신성대, 2009: 34; 최유진, 2006: 61-79; 장미정·조은경, 2004: 135),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과정을 왜곡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선행연구(Bove & Stermac, 2002: 120-121; Lord & Rassel, 2002: 15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이차폭력 사이에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지만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결과가 표본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한 측정도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내용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이차폭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도, 편견과 이차폭력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이차폭력의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주로 다루었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이차폭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폭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지만, 편견은 이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폭력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기 보다는, 수사과정의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차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적극적 수사 강화 및 이차폭력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성폭력 수사지침의 재정비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적극적 수사행동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사건 수사시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성폭력 예방수사』,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단계별 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무적 수사요령을 제공하는 표준화된 성폭력 수사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수사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엄수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최유진, 2006: 96). 아무리 수사지침과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제시되더라도 수사담당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목표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곽대경·곽영길, 2006: 287),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찰의 의식전환 교육

편견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 임무에 대한 인지가 적극적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편견을 줄이는 것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차피해는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편견, 장기간 이어져 온 수사관행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병관, 2006: 416). 이러한 점에서 수사관들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곽대경, 곽영길, 2006: 297).

적극적 수사를 증진시키고 이차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관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성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 성폭력피해자 인권,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교과 과정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이차폭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인권 감수성 교육(김용근, 2008: 114), 양성평등 교육(신성대, 2009: 51)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성폭력에 대한 편견 타파를 위한 의식의 대전환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전문적 수사를 위해서는 성폭력관련 법지식, 경찰임무와 수사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은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적극적 수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폭력관련 법지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경찰들이 정확한 법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임무 수행에 있어 혼선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입법, 개정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류병관, 2006: 416), 법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내용을 즉시 공고하여 정확한 법지식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② 수사실무 교육: 상담, 위험사정 및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의뢰

수사과정에서의 이차폭력은 수사관이 지닌 편견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와 관계를 맺

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의 부족에서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에 필요한 피해자 조사 및 면접기법을 배울 수 있는 상담실무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신성대, 2009: 55; 류병관, 2006: 409; 최유진, 2006: 96). 한편, 성폭력사건 수사시 경찰관들이 사태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거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의 위험성 평가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김재민, 2006: 12-20).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의 위험성 평가지표의 개발, 경찰의 위기개입전문가로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김재민, 2006: 20). 이에 덧붙여,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연계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연계·의뢰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면접기술, 위험성 평가 및 위기개입, 지역사회연계 등의 구체적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4) 수사환경 개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차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경찰관들이 지닌 성폭력에 대한 편견 등의 태도적 요인 외에도, 수사관행 및 수사절차상의 제도적, 실무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이차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황현락, 2007: 397).

특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잦은 출석, 진술반복, 범인 대질신문 등을 통해 이차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디오 영상물 촬영 녹화, 진술영상의 기록,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완화 등 실무적, 수사제도 상의 변화가 요청된다(황현락, 2007: 400; 류병관(2006: 406). 아울러, 안정된 상태에서 비밀보장을 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는 공간, 별도의 조사실이 필요하다(곽대경, 곽영길, 2006: 287; 류병관, 2006: 416). 이러한 수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성폭력피해자 조사 및 상담, 진술녹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양성과 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류병관, 2006: 410-411; 황현락, 2007: 400; 신성대, 2009: 55).

(5)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성폭력으로 인해 정서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내의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때, 성폭력으로 인한 희생화의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Payne, 2007: 92).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경찰의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줄고, 적극적 수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과 다른 관련전문직 간의 보호연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경찰과 다른 전문직과의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입장에서 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수사중심의 임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민감성 부족, 연계의 필요성 인식 부족, 성폭력관련 기관에 대한 지식 부족 등 다양하다. 한편, 성폭력관련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

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차폭력은 성폭력관련 사회복지사의 당연한 관심사이며, 수사과정의 이차폭력을 줄이기 위해 형사사법체계와 사회복지체계 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가 성폭력 등의 폭력문제에 지니는 관심, 경찰의 광범위한 클라이언트집단에 대한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 간의 연계성이 인식됨에 따라(Thomas, 1988; Garrett, 2004:81에 재인용),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 경찰과 사회복지사 사이에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훈련, 공동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Patterson, 2004: 273).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폭력분야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가 협력하여 공동수사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작업이 경찰에게나 아동보호서비스의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Cross, Finkelhor, & Ormrod, 2005: 224). 아동에게 반복 질문하는 일이 줄었으며, 각기 독특한 기술 및 관점을 지닌 두 전문직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가설, 이차적 견해, 상호지지가 가능해졌고, 다른 전문직이 취하는 접근방식에 내재된 문제를 예상, 보상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Cross, Finkelhor, & Ormrod, 2005: 229).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연계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강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경찰과 사회복지사(아동보호서비스) 간 공동수사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다분야 전문팀(Multidisciplinary Tea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Cross, Finkelhor, & Ormrod, 2005: 242).

이러한 경찰-사회복지사의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피해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신속한 개입, 필요한 서비스로의 의뢰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서로를 보완하고 보다 책무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른 전문직과 효과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전문직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연계협력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연계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문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적극적 수사 강화 및 이차폭력 방지를 위한 제언에 덧붙여, 본 연구에 내포된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이차폭력을 연구함에 있어 피해자나 사회복지전문직 외에, 직접적으로 이차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그러나 경남지역 세 도시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경남지역의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 모델의 검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 모델의 검증을 위해 경남이외의 다른 지역, 전국 규모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성폭력과 이차폭력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신뢰도 검증과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척도 타당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화 작업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의 실제 수사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경찰자신의 행동이 이와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문내용에 응답의 타당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에 편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수사행동의 관찰이나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수사행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을 줄일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경찰들의 성폭력사건 수사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한 인지 및 편견의 영향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찰의 실무적인 내용이나 수사환경 등 제반 여건을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경찰의 수사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측된 바와 달리, 편견이 이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견이 이차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편견과 이차 폭력의 직접효과만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나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두 변인간의 관계가 직접효과 보다는 다른 변인을 통한 매개효과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차폭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적 정의,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답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폭력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기 보다는, 수사과정의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차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이차폭력 행동 사이의 매개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수사보안연구소. 2006. 『여성폭력예방수사』. 서울: 정양그래픽스.
- 경찰청. 2002.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서울: 범신사.
- 곽대경·곽영길. 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275-301.
- 김승권 외 13인. 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용근(2008).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16(2): 101-121.
- 김용세·김재민(2006).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18(1): 435-464.
- 김재민(2006).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 3-30.
- 류병관(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연구』 6(1): 395-421.
- 박준호·서영석(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 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송광섭(2004).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통권 82: 5-27.
- 신성대(2009).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기·이상열(2006).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 회과학논총』 16(1): 249-274.
- 이명신·이계민(2009).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1): 263-291.
- 이재희(2008).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9-147.
- 장화정(2006). “아동성학대의 현황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성학대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 67-98.
- 조국(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14(2): 185-210.
- 조호대(2004).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8: 247-270.
- 최유진(2006).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 황정익(2007).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406-434.
- 황현락(2007).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7(2): 375-40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23.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arnett, O., Miller-Perrin, C. L. & Perrin, R.D. (2005).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2nd ed. Sage Publications.
- Bove, G. D. & Stermac, L. (2002). “Psychological Evidence in Sexual Assault Court Cases: The Use of Expert Testimony and Third-Party Records by Trial Court Judges,”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119-134.

- Campbell, R. (2006).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the Legal and Medical Systems: Do Rape Victim Advocates Make a Differ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 30-45.
- Cross, T. P., Finkelhor, D. & Ormrod, R.(2005). "Police Involve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Investigations: Literature Review & Secondary Data Analysis," *Child Maltreatment*, 10(3): 224-244.
- Garrett, P. M.(2004). "Talking Child Protection: The Police & Social Workers 'Working Together'", *Journal of Social Work*, 4(1): 77-97.
- Hamill, S. B., Graham, E. S., Thomason, III, E., Huerta-Choy, R.(2001). "Current Practices in the Use of Televised Child Testimony: Questions of Constitutionality and Personal Bias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2(4): 282-294.
- Hodgson, J. F. (2002). "Policing Sexual Violence: A Case Study of Jane Doe v.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173-189.
- Lord, V. B. & Rassel, G. (2002). "Law Enforcement's Response to Sexual Assault: A Comparative Study of Nine Counties in North Carolina,"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155-172.
- Patterson, G. T.(2004). "Evaluating the Effects of Child Abuse Training on the Attitudes, Knowledge, & Skills of Police Recrui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4): 273-280.
- Payne, B. K.(2004).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ole of Health Care Workers in Sexual Assault Cas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8(1): 81-94.
- Renner, K. E.(2002). "Reconceptualizing Sexual Assault from an Intractable Social Problem to a Manageable Process of Social Change,"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135-153.
- Ullman, S. E. and Townsend, S. M. (2007). "Barriers to Working with Sexual Assault Survivors: A Quallitative Study of Rape Crisis Center Workers," *Violence against Women*, 13(4): 412-443.

Determinants of Male Police Officers' Investigative Behavior(Active Investigation vs.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Lee, Myung-Sh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ang, Nan-M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male police officers' investigative behavior(active investigation vs.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For this purpose, a hypothetical model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5 variables (knowledge of law about the investigative role,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 connective role,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active investigation, and secondary victimization) was develop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54 male police officers of 3 cities in Gyeongnam area, the hypothetical model was tested. For data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nd the final model was found(CFI=0.947, IFI=0.948, RMSEA=0.04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l, the followings were found: ① Active investigation was increased by knowledge of law about the investigative role, and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 connective role, while decreased by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② Secondary vicimization was decreased by knowledge of law about the investigative role. ③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mediate the effects of knowledge of law about the investigative role, and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 connective role on active investigation. ④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econdary victimization.

Based on the findings, multi-educational programs, protocols on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professionalization of the police, and changes in investigation environment as well as a system of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officer and social worker were suggested as a way to increase active investigation and to decrease secondary victimization.

Key words: knowledge of law about the investigative role,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 connective role,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active investigation, secondary victimization

[논문 접수일 : 10. 08. 26, 심사일 : 10. 09. 04, 게재 확정일 : 10. 11. 29]